

경운대학교 편제및정원조정에관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학사조직의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하여 교육조직의 개편 및 학생 정원의 조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편제 및 정원조정”이란 대학 발전계획과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교육조직을 조정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원조정, 신설, 통합, 변경, 모집중지, 폐지 등과 같은 조치를 말한다.
2. “계열”이란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공학, 의학으로 교육부 5대 대계열 분류를 말한다.
3. “학부(과)”란 대학내 학부 및 학과, 단일 학부 대학에서는 전공을 말한다.
4. “정원”이란 제3호에서 정한 학부(과)의 입학정원을 말한다.
5. “정원조정”이란 학부(과)의 입학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는 것을 말한다.
6. “학부(과)신설”이란 새로운 학부(과)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7. “학부(과)통합”이란 기존 2개 이상의 학부(과)를 1개 학부(과)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8. “학부(과)변경”이란 명칭 및 소속단과대학의 변경을 말한다.
9. “모집중지 학부(과)”란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모집단위(학부(과))를 말하며, “폐과” 전 단계로서 모집중지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해당 학부(과)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들에 대한 전공교육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전공단위를 말한다.
10. “폐과”란 적법한 개정 절차를 통해 모집중지 후 편제정원이 완전히 소멸되는 모집단위(학부(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학칙」 제4조에 규정된 대학, 학부(과)와 「대학원학칙」 제4조에 규정된 대학원, 학과의 편제 및 정원조정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학부(과) 정원의 증원 및 감축
2. 학부(과) 신설, 통합, 변경, 모집중지, 폐지
3. 그 밖에 학사조직 개편 및 학생정원 조정에 관련된 사항

제4조(조정시기) 차기 학년도 학생 모집공고 이전에 편제 및 정원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장 편제 및 정원조정의 개편절차

제5조(기본원칙)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편제 및 정원조정 개편을 추진한다.

1.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유사 편제단위를 통합하고, 융복합 학문을 권장한다.
2. 편제단위 최소 정원은 40명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소 정원이 40명이 아닐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3. 대학 발전계획의 비전 달성과 학문단위 특성화 등을 위해서 편제 및 정원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
4. 편제 및 정원조정 개편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최소정원에 미달되는 편제단위는 위원회가 정원조정, 타 편제단위와의 통합, 교육과정 개편, 교원의 인접전공 연구, 교원 소속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편제 및 정원 개편절차) 편제 및 정원 개편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제 및 정원조정 발의
 - 가. 대학 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편제 및 정원조정
 - 나. 학부(과) 정원조정 신청
2. 학부(과) 대·내외 여건 분석 및 경쟁력 평가
3. 구성원 의견수렴
4. 편제 및 정원조정안 수립
5. 편제 및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학부(과) 의견수렴
6. 학과 신설·개편 필요시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실시
7. 교직원 및 학생(대표)의 동의서를 통한 합의
8.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

제7조(사무) 교육편제 및 정원의 조정에 관한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제3장 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

제8조(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편제 및 정원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편제 및 정원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편제 및 정원조정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학부(과) 경쟁력 평가

제9조(평가시기) 대학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학부(과)의 발전 잠재력과 성과

를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한다.

제10조(평가방법 및 실시) ① 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에서 각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학부(과) 발전 잠재력 등 정량평가와 학부(과) 발전계획 추진실적 등에 대한 정성 평가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학부(과)의 평가지표, 가중치는 [별표]과 같이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만점기준 : 100점
2. 학부(과) 발전 잠재력 : 80점
3. 학부(과) 발전계획 추진성과 : 20점
4. 학부(과) 발전 잠재력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반영하여 적용하며, 학부(과) 발전계획 추진 실적은 당해 연도의 실적을 반영한다.
5. 학부(과) 발전 잠재력은 평균값의 T값(20점~80점)으로 산정하며, 학부(과) 발전계획 추진실적은 5개 영역을 리커트 척도로 점수화하여 산정한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요소를 변경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신설된 학부(과)는 그 편제가 완성되는 학년도까지 학부(과) 경쟁력 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⑤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자료 준비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활용) 학부(과) 경쟁력 평가결과는 전 교원에게 공개하고 편제 및 정원조정에 활용하며, 대학 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우수학과 선정 및 지원 등 기타 다양한 대학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편제 및 정원조정의 지원

제12조(후보 선정 및 정원조정 기준) ① 학부(과) 경쟁력 평가점수가 최근 3년간 우리대학 평균점수의 60%이하인 경우, 폐과심의의 대상이 되며 위원회에서 개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학부단위로 모집하는 전공의 입학지원을 평가결과 지원율이 2년 연속 30%미만인 전공은 편제 및 정원조정을 할 수 있다.

③ 모집중지 학부(과) 입학정원의 합이 대학이 결정한 정원조정 인원에 부족(초과)할 경우 경쟁력 평가결과 하위 학부(과)의 순으로 편제 및 정원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도 대학 정책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편제 및 정원조정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율적 학과 통합) 제12조에 따라 편제 및 정원조정 후보 선정전까지 2개 이상의 학부(과)가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통합을 요청하는 경우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편제 및 정원조정 유예) ① 제13조에 따라 편제 및 정원조정 후보 학부(과)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구방안을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제 및 정원조정을 유예할 수 있다.

1. 편제 및 정원조정 결과 통합된 학부(과) - 2년 유예
2. 편제 및 정원조정 결과 전환된 학부(과) - 2년 유예
3. 제13조에 의하여 통합된 학부(과) - 2년 유예
4. 신설학과 - 2년 유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제 및 정원조정 후 첫 신입생 충원율이 60%이하일 경우 편제 및 정원조정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특별 지원 등) 자율조정을 실시하여 학생정원을 감축하거나 학사조직을 개편한 학부(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부(과) 교원정원 우선 배정
2. 학부(과) 평가와 연계한 가산점 부여
3. 교육과정 개발비 지원
4. 필요시 학부(과) 공간 우선 배정
5. 전공 전환자의 교육 지원 예산
6. 그 밖의 정착에 필요한 예산 등

제6장 학습권 보장

제16조(폐과에 따른 전과 및 전공변경) 폐과에 소속된 재적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과 및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 단, 국가에서 정원을 관리하는 학과로의 전과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학습권) ① 폐과가 될 경우 재적학생에 대해 잔존학과로 유지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② 폐과교원은 연차적 개설과목 축소를 포함한 잔존학과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가 지정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과교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지정한 부서에서 직접 작성하여 시행한다.

③ 잔존학과가 자체적으로 과목을 개설할 수 없는 때에는 남아있는 재적학생에 대하여 대체과목 학점인정을 통해 학위를 수여한다.

제7장 교원의 소속 전환

제18조(모집중지 학과의 교원) ① 총장은 모집중지된 학부(과) 소속 교원에 대하여 소속 전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소속 전환을 희망하는 교원은 교원소속전환신청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소속전환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소속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단, 신설 학부(과)의 경우 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에서 소속전환 요건을 판단하여 소속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폐지된 학부(과)의 교원은 다른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교양강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2년간 부여할 수 있다.

④ 동일한 학부(과)로 소속전환을 희망하는 교원이 다수일 경우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절차를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9조(소속 전환대상) 제11조의 모집중지된 학부(과) 소속 교원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교원은 소속전환신청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거쳐 소속을 전환할 수 있다.

1. 신설되는 학부(과)로 소속 전환을 희망하는 교원
2. 타 학부(과)로 소속 전환을 희망하는 교원

제8장 보 칙

제20조(모집중지된 학부(과)의 학생 교육) ① 총장은 모집중지된 학부(과)의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모집중지된 학부(과)의 학생 처리는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별표] 학부(과) 경쟁력 평가지표, 가중치(제102조 제2항 관련)

평가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평가점수		
		세부비중	계			
대내외 경쟁력	신입생충원율	30%	50%	80점		
	재학생충원율	30%				
	중도탈락율	10%				
	취업률	15%				
	전임교원확보율	5%				
	장학금지급율	5%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5%				
	소계	100%			50%	
연구 역량	연구업적	100%	10%	80점		
	소계	100%	10%			
산학 협력 역량	산학교육	30%	40%		20점	
	산학연구	30%				
	산학활동	40%				
	소계	100%	40%			
발전 계획 추진 실적	목표의 타당성	2점	100%			20점
	계획의 적절성	3점				
	내용·방법의 적합성	5점				
	진척도	5점				
	완성도	5점				
			100%			
합계				100점		